

2019년 국가인권보고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요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북한)은 1949년 이래 김씨 일가가 지배해 온 권위주의 국가이다. 2011년 김정일의 사망 직후 그의 아들인 김정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이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장, 조선인민최고대표를 겸하고 있다. 김정은의 할아버지 고(故) 김일성은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에 실시된 지난 3월의 선거는 자유 선거 또는 공정 선거로 규정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보위 기관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유지하였다. 주요 국내 보위 기관으로는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성, 보위사령부가 있다. 이들 기관 간 권력 및 책임은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복되어 있는데 이는 잠재적으로 권력이 한 곳으로 예측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중대한 인권 문제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불법적 혹은 임의적 처형, 정부에 의한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보위 조직에 의한 임의 구금,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가혹하며 때로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여건의 구금시설, 정치범, 임의적 또는 불법적 사생활 침해, 사법 독립 부재, 표현의 자유 및 언론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제한과 검열 및 사이트차단, 평화적 집회 권리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상당한 침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약, 정치참여제한, 만연한 부패, 강제 낙태, 인신매매, 독립적 노조의 불법화, 강제 또는 강압적인 아동 노동, 대중 동원 및 교화제도의 일환으로 자행되는 국내 강제 노동, 강제 노동에 준하는 여건에서 근무하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등이 있다.

북한 정부는 인권 유린을 자행한 관리들을 기소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해 연말 기준 북한 정부는 당국에 의해 부당하고 근거없이 억류된 뒤 2017년 석방 직후 숨진 오토 뱌비어의 사망 관련 정황을 여전히 확인해주지 않고 있으며 면책은 지속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문제이다.

제1절. 인간의 고결성에 대한 존중과 아래 항목으로부터의 자유

A. 임의적 생명의 박탈과 여타 불법적 또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살인

정부 또는 정부 요원이 임의적, 불법적 살인을 자행하였다는 보고는 많다. 탈북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정부가 정치범, 반정부인사,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 정부관리 및 기타 범죄로 고발된 피의자들을 처형한 사례가 있었다. 북한은 법으로 가장 "중대"한 "반국가" 또는 "반민족" 범죄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고 포괄적으로 해석된다. 즉,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한 정변이나 음모에 가담하는 행위, 반국가적 테러 행위, 그리고 탈북, 국가기밀전달을 비롯한 반역행위, 다른 나라에서는 정례적으로 발표되는 경제·사회·정치 상황에 관한 정보 제공, 그리고 "기만적인 파괴행위" 등이 있다. 또한 절도, 군사시설·국유재산파손, 마약유통, 위조, 사기, 납치, 포르노물 유통, 인신매매 등 비교적 심각성이 덜한 범죄에 대해서도 북한법은 사형을 허용하고 있다. 탈북자들과 언론에서는 북한 정부가 정치범, 장애인, 또는 정부 관리나 교도관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거나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산모를 대상으로 정부가 영아 살해를 자행하거나 산모들에게 영아 살해를 요구했다고 보고했다.

비정부기구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단으로 탈북하는 주민들은 사살되거나 공개 처형될 수 있고, 정치범 수용소 간수들 역시 탈출을 시도하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018년 6월 NK News는 현주성 인민군 중장이 직권남용, 이적행위, 해당행위를 이유로 총살당했다고 보도했다. 현주성은 "이제는 허리띠 조이며 로켓나 핵무기 만드느라 고생 안 해도 된다"고 말하면서 추가 식량과 연료를 휘하 군관들에게 배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11일에는 말레이시아 검찰이 2017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 살해에 가담한 용의자 여성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였다. 이후 같은 달 같은 혐의의 두번째 용의 여성은 혐의조정을 수용해 말레이시아에서 조기 석방되었다. 리지우, 홍성학을 비롯한 네 명의 북한 요원들은 재판을 받지 않은 채 암살 직후 말레이시아를 출국, 북한으로 돌아갔다.

당해 연말 기준 북한 정부는 당국에 의해 부당하고 근거없이 억류된 뒤 2017년 석방 직후 숨진 오토 월비어의 사망 관련 정황을 여전히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 처형을 실시했다. 2016 년 조사에 따르면 탈북자 64 퍼센트가 공개 처형을 목격했으며 일부는 학교 현장학습 차 공개 처형장에 갔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의 국책 연구 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매년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 2019 에는 소, 옥수수나 쌀을 훔친 이, 한국의 미디어를 배포한 이들을 공개 처형했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있었다.

B. 실종

비정부기구, 연구소, 언론 보도는 북한 정부가 실종 사건에 책임이 있음을 암시했다.

한국 언론은 탈북자들을 납치하여 강제 송환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위성 요원들이 중국 접경 도시로 파견됐다고 보도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에 정착한 뒤 중국을 방문한 탈북자들을 납치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탈북자 가족에게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도록 설득하라고 강요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1970-80 년대에 북한이 납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인 12 명의 행방에 대한 조사는 당해 연도에 진전이 없었다.

한국 정부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70-80 년대에 북한은 해외에서도 타국민들을 납치했다고 한다. 북한은 이러한 납치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계속 부인하였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516 명이 납북된 것으로 한국이 공식 집계하고 있고, 그 외 수천명이 행방불명상태라고 밝혔다. 한국 비정부기구들은 한국전쟁 중 북한이 민간인 2 만명을 납치했고 이들이 북한에 생존해 있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북한 형법은 고문이나 비인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런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다수의 소식통이 보고했다.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비정부기구 보고서들은 여러 구금시설에서 고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문·학대의 방법으로는 혹독한 구타, 전기 충격, 비바람에 장시간 노출, 공공장소에서 알몸노출과 같은 수치심 유발, 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없는 좁은 "형실"에서 최대 수주일간 감금, 장시간 무릎을 꿇거나 움직이지 않고 앉기, 손목에 묶여 매달려 있기, 물고문, 쓰러질 때까지 일어서고 앉기 반복, 두 손을 등 뒤에 각지 끼고 쪼그리고 앉았다 서기를 반복하는 "펌프"가 있다.

고문, 질병, 굶주림, 비바람에 노출 또는 이러한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많은 수감자들이 사망했다고 탈북자들은 보고했다. 노동 수용소에서 교화를 받는 수감자들은 가혹한 여건에서 고된 육체 노동을 하도록 강요당했다고 보고했다. (7.b 절 참조)

2017년 12월에 세계변호사협회(IBA)에서 발간한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반인도범죄에 관한 조사 보고서」는 물고문과 전기고문은 국가안전보위성이 사용하는 일상적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옷을 벗기고 거꾸로 매달아 매질을 하거나 손톱 밑에 바늘을 쑤서 넣는 등의 고문 형태도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19에 따르면 중국에서 송환된 아동도 고문, 언어 폭력 그리고 구타, 가혹한 노동 및 굶주림과 같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한다.

교도소 및 구치소 실태

식량 부족, 과밀 수용, 신체적 학대, 부족한 위생 및 의료 여건으로 인해 교도소 내 환경은 가혹하고 생명에 위협이 되는 수준이었다. 비정부기구, 탈북자 및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강제노동수용소, 별도의 정치범수용소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교도소, 구치소,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비정부기구는 여섯 종류의 구금 시설이 있다고 밝혔는데 관리소(정치적 처벌 목적의 노동 수용소), 교화소(교정 및 교화 시설), 교양소(노동개조시설), 집결소(경범죄자 집단시설), 노동단련대(노동 교육장), 구류장/감옥(취조 시설 또는 감옥)이다. 2017년도 통일연구원 백서에 의하면, 국가안전보위성이 관리소를 관리하고, 국가안전보위성 혹은 인민보안성이 여타 구금 시설들을 관리한다.

통일연구원의 2018년도 백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19개의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고, 관리소 당 5천~5만 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북자들은 관리소 내에 이름 없는 묘지, 막사, 작업장 및 기타 수감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했다.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개천(14호), 화성/명간(16호), 북창(18호), 청진(25호),

처마봉 통제구역 등 5~6 개 관리소 시설이 존재한다. 북한인권위원회는 2013 년과 2014 년 사이에 건립된 처마봉 통제구역의 경우 목격자 증언에 의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운영 중이며 관리소의 모든 특징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비정치적 범죄행위로 징역형을 받은 이들을 교화시설에 보내 혹독한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보고가 있었다.

탈북자들은 정치범 수용소와 그 외 수용 시설에 수감된 많은 이들이 그 곳에서 살아 나오기는 어렵다고 말하였다. 피구금자와 수감자들은 폭력과 고문 행위를 지속적으로 보고했다. 탈북자들은 정치범 수용소 내 공개처형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일부 수용소에서는 수감자들이 음식을 거의 혹은 전혀 제공받지 못하거나 치료도 받지 못한다. 위생 상태는 엉망이고, 강제노동수용소 생활을 경험한 이들은 수감 기간 동안 옷을 갈아입지 못했고, 목욕과 세탁도 거의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국 언론 및 외신 보도에 의하면 최대 수천 명의 정치범, 경제사범 및 일반 범죄자가 교화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북한인권위원회의 2017 년 보고서 「또다른 수용소, 북한의 '안전부' 수용소」에 따르면 교화소와 관리소 시설 모두 극히 가혹한 여건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탈북자 증언을 인용해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투옥, 강제 노동, 연명하기 힘든 수준의 식량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물리적 여건: 교도소와 수용시설의 총 수감 인원은 8 만에서 12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교도관들의 물리적 학대는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17 년 사례보고에 따르면 일부 수용소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분리 수감되고 여성들은 흔히 성적학대의 대상이 된다. 과거 보고에서 성폭행은 교도관들과 여타 관리들이 누리는 면책과 견제 받지 않는 권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8 년 휴먼라이츠워치는 2009 년과 2013 년 사이에 수용 시설에서 일어난 성적 학대에 관해 탈북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발표했다. 피해자들은 보위성이나 경찰 조사관에 의해 집결소와 구류장에서, 그리고 시설 간 이송 중에도 성적학대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19 에 따르면 수용소 내 영양, 위생, 의료 여건은 여전히 끔찍한 수준으로 보인다. 수감 중 발생한 사망 건수에 대한 통계는 없으나 탈북자들에 따르면 즉결 처형, 고문, 적절한 치료 부족,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이 흔한 실정이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굶주림과 방치, 고된 강제노동, 질병, 처형으로 인한 “수감 중 극도로 높은 사망률”을 언급했다.

또한 정치범들은 일반 수감자들보다 훨씬 더 혹독한 여건에 놓이게 된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14호 관리소에서 재소자들은 여름에는 하루 12시간 그리고 겨울에는 하루 10시간 작업을 하고 한 달에 하루를 쉰다. 관리소들은 새해 첫날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을 기념한다. 12세 이상의 어린이들도 작업에 참가하고, 교도관들은 65세 이상의 재소자들에게는 가벼운 임무를 맡긴다. 북한인권위원회에서 2016년 발간한 ‘수용소 주식회사’에 의하면, 정치범 수용소 3곳과 교화소 4곳에서 운영하는 광산에서 수감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투입되고 있으며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 수감자는 발에 개방성 골절을 입었지만 당일에 광산으로 복귀해야 했다고 보고했다. 수감자들은 아플 때에도 작업에 투입됐다.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수감자는 배식량이 축소되고 폭행을 당했다. 절도 행위가 적발된 수감자는 임의적이고 가혹한 폭행을 당했다.

법적으로 14세 미만인 자가 저지른 형사 사건은 기각된다. 또한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자에 의한 범죄에는 사회적 교양처분이 적용된다. 하지만 어떻게 이 법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당국은 종종 청소년들을 가족과 함께 구금하고 수용소에서 고문, 학대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행정: 수감자 및 피구금자가 면회인을 적절히 접견할 수 있었다는 증거는 거의 없었다. 탈북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기독교 수감자들은 다른 수감자들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수용시설 내 종교 행위를 하다 적발된 수감자들이 실종된 사례가 2016년 보고되었다. 가혹행위에 대한 신뢰할 만한 주장이 제기된 경우, 당국이 적절한 조사를 실시했는지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또한 북한 정부가 교도소나 구치소 실태를 조사하고 점검했는지 여부에 관해 공개된 정보는 없었다. 2019년 북한인권위원회의 복청리 교화소 사진 분석에 따르면 당국, 특히 군 및 내부 보위기관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수용소에서의 활동을 위장하고 숨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적 감시: 정부는 교도소 실태 점검을 위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입국을 불허했다. 또한 정부는 여타 인권 조사관들의 교도소 및 구치소 사찰을 허용하지 않았다.

D.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

북한법은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금지하고 있으나 탈북자, 언론 및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금지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체포 절차 및 피구금자 처우

북한법은 기소 및 재판 기간 동안 구금을 제한하고 영장에 따른 체포를 규정하고 자백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조항이 적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위기관원들은 정치적 범죄의 혐의가 있는 주민들을 체포하여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하였다고 한다. 한국의 한 비정부기구에 의하면, 인민보안성은 검찰의 승인 없이 형사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의 부패 때문이라고 한다. 한 비정부기구는 법적으로 조사관들이 조사를 목적으로 최대 2개월간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위원회는 국가안전보위성이나 인민보안성 조직이 용의자들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심문했다고 보고했다. 재판이 있을 때까지 보석 또는 석방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민을 정부가 마음대로 구금, 수감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시키는 데 대한 제약은 없다. 피구금자의 가족 또는 관련인들은 사실상 피구금자에게 적용된 혐의 및 형량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한다. 탈북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피구금자의 체포, 구금, 형량에 대해 가족들은 통보받지 못하며, 구속적부심 혹은 항소 제도는 법률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5년에 자의적 구금에 관한 유엔 실무그룹에서 채택한 의견서에 따르면, 정치적 죄목으로 수감된 피구금자의 가족은 피구금자의 석방을 청원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데 이는 정부가 이같은 정치범 옹호 행위를 국가 반역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며 가족의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피구금자 변호인 접근에 관한 정보는 구할 수 없었다.

자의적 체포: 자의적 체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된다. 2019 유엔사무총장 북한인권보고서에서는 자의적 체포가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구금자가 법원에 구금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능력: 탈북자들에 의하면 개인이 법원에 구금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E. 공정한 공개 재판 받을 권리 없음

북한 헌법에 의하면 법원은 독립적이며 법에 엄격히 의거하여 사법절차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독립된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2019년 통일연구원 백서에 의하면, 수사 혹은 예비 심문 단계와 구금 시설에서,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판·검사 뇌물 수수와 부패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재판 절차

공식적인 형사소송절차 및 관행에 관한 정보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사법제도에 대한 외부인 접근은 교통법규 위반 및 기타 경범죄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 국한되었다.

북한 헌법은 세부적인 사법절차상의 보호장치를 명시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규정하는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변호권이 주어지는데, 실제 재판이 열렸을 때 정부는 국선변호인을 배정했다고 한다. 일부 보고서는 정치범과 비정치범의 구분에 주목하고 있으며, 정부가 비정치범에 국한하여 재판과 국선변호인을 제공한다고 한다.

국가안전보위성이 모든 정치적 사건에서 “사전심리”나 예비 심문을 수행하지만 재판은 법원에 의해 이뤄진다고 한다. 일부 탈북자들은 국가안전보위성도 재판을 수행한다고 증언했다. 2018년도 통일연구원 백서는 일부 탈북자 증언을 인용하여 정치범 수용소 수감 여부는 재판에 상관없이 국가안전보위성에 의해 단독으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인이 존재한다는 징후도, 당국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른다는 징후도 없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대다수의 수감자들은 재판 없이 혹은 국제법에 규정된 절차와 공정한 재판 보장을 준수하지 않는 재판에 근거하여 투옥되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구금의 희생자들이다.”

정치범과 피구금자

정치범과 피구금자 전체 숫자는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2018년 통일연구원 백서에 따르면 8만명에서 12만명이 관리소에 수감되어 있다. 비정부기구들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치범들은 기타 재소자 및 피구금자들 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고 보호는 덜 받았다. 북한 정부는 체제 비판자를 정치범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과거 보고에 따르면 한국으로의 탈북 시도나 한국으로 탈북한 가족 구성원과의 접촉, 김일성 또는 김정일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깔고 앉거나 김일성의 낮은 학력을 언급하는 행위, 혹은 김일성 부자의 사진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정치적 범죄로 간주되었다고 한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일반' 재소자들은 사실 "국제법과 양립될 수 있는 실체적 이유 없이 구금된" 정치범들이었다.

해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동기의 보복행위

북한이 정치적 목적으로 다른 국가에 탈북자를 송환하도록 압박을 행사한 신뢰할 만한 여러 보고가 있었다. 유엔 사무총장에 따르면 여러 유엔 회원국 및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고문을 비롯한 인권 침해에 당할 상당한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민사 절차 및 구제 제도

북한 헌법은 "국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소와 청원에 관한 법에 따라 국민은 권익의 침해를 중지시키기 위한 신소를 제기하고 권익 침해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각종 보고들은 정부 관리들이 이러한 권리들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국가 행정에 관한 익명의 청원이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인민보안성이나 국가안전보위성은 작성자 신원 파악에 들어가며 이들은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개인과 기관은 국내의 불리한 결정을 지역 인권 단체들에게 호소할 능력이 없다

F. 사생활, 가정, 주거, 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

북한 헌법은 인신과 주거의 불가침 및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엄격히 통제한다. 북한인권위원회의 12월 보고서 '디지털 참호: 북한의 정보 반격'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이웃 감시대' 라고 할 수 있는 인민반이라는 방대한, 다층적 정보원 망을 이용해 비판론자나 정치범을 찾아내고 있다. 당국은 때때로 사법부 허가 없이 가택수색을 하며 주민공동체 전체에 보안 검열을 했다.

북한 정부는 서신과 전화 통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기타 디지털 통신 내역을 감시하는 것으로 보였다. 민간 전화회선은 국제전화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시스템 상에서 작동했고, 국제 전화회선은 제한적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였다.

국가안전보위성은 휴대폰 사용 및 전자 미디어 접속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 당국은 중국 전화망을 통한 국제전화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북중 접경지역에서 자주 휴대폰 신호를 방해하였다. 중국 유심카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이들을 체포하여 벌금을 물리거나 간첩혐의 또는 기타 범죄혐의를 씌우고 장기 수감을 포함하여 혹독한 처벌을 받게 하였다. 국가안전보위성 및 기타 정부 기관은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주민을 감시하고 체포권을 유지하고 특수 목적의 비군사적 수사를 진행하였다.

북한 정부는 주민을 엄격한 충성도에 따른 계층, 즉 성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 고등교육, 거주지, 의료시설, 특정 상점, 결혼상대, 식량배급에 대한 접근권이 결정된다.

제 2 절 시민적 자유의 존중

A. 표현 및 언론의 자유

헌법은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정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심문을 받거나 체포 당한 이들의 사례가 많았다. 북한 정부는 호주인 알렉 시글리가 해외 매체에 글을 올려 “반공화국 모략선전행위”를 했다고 하며 지난 6월 그를 구금한 뒤 차후에 추방하였다. ‘북한의 조직지도부: 북한 인권 거부의 통제탑’이라는 제목의 9월 보고서에서 북한인권위원회는 모든 북한 주민은 반드시 당국의 감시를 받는 정치 모임 및 정기적 생활총화에 참가해 김씨 일가에 대해 충성심을 증명해야 하며 열성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강제노동, 북한 내 타지역으로 추방, 구금, 식량 및 치료 제공 거부 등을 비롯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매체를 비롯한 언론의 자유: 북한 정부는 사실상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 했다. 독립 언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기자들은 기사를 취재할 자유가 없으며 자유롭게 보도할 수 없다. 정부는 노동당 선전선동부를 통해 인쇄매체, 방송매체, 책 출판, 온라인 매체를 철저히 통제했다. 선전선동부 내에서 출판방송부가 TV, 신문, 라디오에서 사용된 콘텐츠를 포함하여 모든 매체의 콘텐츠를 통제한다. 북한 법에 따라 승인받지 않은 방송이나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노동 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으며, 복수의 법 위반시 최대 5년간 수감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그 중에서도 특히 언론인의 방북을 주의 깊게 관리했고 외국 언론인을 추방시키거나 입국을 금지했다. 외국 정상외 방문 시 당국은 외국 기자단이 공식 방문단을 수행하고 기사를 송출하도록 허가했다. 어떤 경우라도 당국은 엄격히 기자들을 감시하였다. 정부 관리들은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관리들이나 거리의 주민들에게 말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

검열 혹은 콘텐츠 제한: 엄격한 국내 언론 검열이 지속되었고, 공식적인 노선에서 벗어난 보도는 용인되지 않았다. 북한 정부는 정치 엘리트를 제외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외국 방송의 청취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라디오 및 TV 수신기는 개조하지 않는 이상 국내 방송만을 수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해외에서 들어온 라디오도 이를 위해 개조했다. 엘리트 주민들과 호텔 등의 외국인용 시설들은 위성으로 외국 TV 방송을 수신했다. 북한 정부는 해외 라디오 방송을 차단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했다. 그러나 북한인권위원회의 지난 12월 보고서 ‘디지털 참호: 북한의 정보 반격’에 따르면 최근에는 외국 방송사 송신기가 확산되어 당국의 전파 차단 노력을 압도할 정도라고 한다. 관리들은 외국 TV 방송을 시청하거나 외국

라디오 방송을 청취한 주민을 수감하고 처벌했으며, 일부 경우에는 관영 방송 이외의 방송이 수신가능한 라디오나 TV 를 단순히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했다.

국가안보: 탈북자들과 비정부기구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이 정부나 김정은 비판을 비롯한 반공화국 범죄로 처형되는 등 구금 및 처벌 받는 사례가 있다고 전해진다.

인터넷 자유

인터넷 사용은 고위 관리 및 특별히 선별된 대학생 등 일부 엘리트 계층에 국한하여 허용되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지난 12 월 보고서 '디지털 참호: 북한의 정보 반격'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완전히 감시하고 있고 북한의 인터넷 게이트 키퍼 역할을 담당하는 조선컴퓨터중심은 수용가능한 정보로 간주되는 정보에 한해서만 접근을 부여했고, 직원들이 사용자의 스크린을 상시적으로 감시했다.

북한에는 영재학교, 선별된 연구소, 대학, 공장 및 소수의 개인 등 평양을 중심으로 점차 많은 사용자들이 접할 수 있고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는 "인트라넷"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정부기구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 내부용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부 이메일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간혹 정부 직원들은 엄격한 감시하에 제한적으로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다. 북한의 이동통신망은 3G 를 지원하지만 대부분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은 관보처럼 북한 인트라넷을 통해 국가가 허락한 소수의 기능으로 국한되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방문한 모든 웹사이트를 기록하고 무작위로 삭제 불가능한 스크린샷을 찍는다고 보고했다.

학문의 자유 및 문화행사

북한 정부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했고 예술작품도 통제했다. 교육과정은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정부는 학술 여행을 크게 제한했다. 연극, 영화, 오페라, 아동 공연 및 서적의 주요 기능은 김씨 일가의 우상화 작업과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에 주재하는 외국 정부 및 NGO 관계자들은 매스게임으로 인해 다수의 청소년들이 동원돼 의료진이 부재한 상황에서 부상과 탈진이 위험이 높은 가운데 장시간 집단 체조와 춤을 연습해야 했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대중매체, 학교, 노동자 및 주민 단체 등을 통하여 사상적 교화를 체계적으로 실시했다. 사상적 교화의 일환으로 단체행진, 군중대회, 무대공연 등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었고, 수십만 명의 군중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었다.

북한 정부는 주민에 대한 외부의 영향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외국 영화를 시청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은 징역형 혹은 사형에 처해진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통일연구원의 2018 년도 백서에서 탈북자들은 남한 영화를 시청하거나 남한 음악을 듣다가 걸린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는 당국의 선포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증언하였다. 2017 년도 통일연구원 백서는 남한의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배포해서 처형된 사람의 수가 지난 몇 년간 증가했고 노동 교화형에 처해진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 월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에 파일 워터마킹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디어 파일이 공유될 때마다 파일명 끝에 사용자 또는 기기 고유의 정보를 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인터미디어는 2015 년에 실시한 탈북자 면담을 기초로 탈북자 가운데 많게는 29 퍼센트가 북한에 있을 때 외국 라디오 방송을 청취했으며 면담한 탈북자의 약 92 퍼센트가 북한에서 외국 DVD 를 시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디지털 참호: 북한의 정보 반격'에서 북한 젊은이들은 외국 라디오 방송보다는 외국 디지털 동영상 콘텐츠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북한 정부는 남한의 대중문화, 특히 TV 드라마의 반입을 막는 노력을 기울였다. 언론 보도 및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외국 영화를 금지하기 위하여 경찰은 가택수색을 할 수 있다. 인터미디어에 의하면, 정부는 모든 국내용 휴대폰에 '서명 시스템'으로 알려진 소프트웨어 기반 검열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이 시스템은 휴대폰에서 외국 미디어를 보는 기능을 차단한다. 불법 미디어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 휴대폰은 무작위로 검사되며, '트레이스뷰어'라는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기기 사용 이력이 조회, 추출된다. NW 뉴스의 10 월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외부 정보의 유입을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해 특별 공안부대를 창설했다고 한다.

B.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북한 정부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

북한 헌법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고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모든 공공 집회를 지속적으로 금지했다.

결사의 자유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북한 정부가 설립한 단체들을 제외하고 알려진 조직은 없었다. 직업관련 협회는 주로 협회 구성원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존재한다.

C. 종교의 자유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보고서 참조 <https://www.state.gov/religiousfreedomreport/>.

D. 이동의 자유

북한 법률은 “거주 및 여행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국내 이동: 북한 정부는 합법적으로 국내에 머무는 자들의 국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여행 규정을 위반하는 이는 경고나 벌금 혹은 강제노동에 처해졌다. 극소수의 엘리트 및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는 주민들만이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모든 도시의 주요 출입 도로에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2019 년도 통일연구원 백서는 처벌을 피하는 수단으로 뇌물

수수가 확산됨에 따라 거주하는 지방 내에서 개인의 이동이 보다 자유로워졌다고 보고했다. 허가증없이 여행하다 적발되면 뇌물을 주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식량 사정, 주택, 보건 및 일반 주거 환경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우수한 평양에서의 거주, 심지어는 진입 허가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한 외국 관리들은 평양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상에서 검문소들을 목격했다고 한다.

해외여행: 북한 정부는 해외여행도 제한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정부 관리, 신뢰할 수 있는 사업가, 예술가, 체육인, 학자, 근로자에 한하여 해외여행을 위한 출국 비자를 발급한다. 일부 주민들에게는 친척 방문이나 단기 취업기회 또는 소규모 교역을 위한 단기출국서류가 매우 제한적으로 발급된다.

북한 정부는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당해 연도에 국경 지역의 보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허가증 없이 중국으로 밀입국하는 주민의 수가 대폭 제한되었다.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에 따르면, 국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엄격한 순찰 및 감시는 물론 뇌물을 받고 월경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국경경비대원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 법률은 망명과 망명기도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 3 국에 망명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목적으로 국경을 넘는 자(어린이 포함)는 5 년 이상의 "노동 교화"에 처해진다. 보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망명 신청자는 무기징역과 강제노동, 재산몰수, 혹은 사형 등에 처해진다. 2018 년 통일연구원 백서에 따르면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 대부분은 함경북도 전거리 교화소나 평안남도 개천 교화소에 수용된다고 한다.

강제로 본국에 송환된 다수의 탈북 시도자들은 혹독한 조건 하에 수감된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이 한국에 재정착한 주민 등 외국인과 많은 접촉을 한 주민들이 특히 가혹한 처벌의 대상이라고 한다.

김정은이 탈북자들의 재입북을 독려할 목적으로 북한 내 가족들을 상대로 압박을 가할 것을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는 2018 년 5 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탈북자들은 북한 관리의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북한 내 가족들이 자신들에게 접촉해 재입북을 종용했다고 보고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자 수는 2017 년에서 2018 년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11 월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2019 년 탈북자 수도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탈북자들의 과거 증언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는 주민(단지 몇 개월의 강제노동형 혹은 단순 경고만 받음)과 “정치적”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국경을 넘는 주민(때때로 보다 가혹한 처벌에 처해짐)을 구분하였다. 여기에는 북중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종교단체들과 접촉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북한의 법률은 불법 월경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노동 교화”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이주: 북한 정부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 국내 강제이주를 단행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북한 정부는 강제로 수만 명의 평양 주민을 지방으로 이주시켰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단으로 이러한 이주 정책을 이용한 경우가 있었고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사상이 의심되는 주민들도 강제이주의 대상이 되었다.

E. 국내 유민

해당사항 없음.

F. 난민보호

북한 정부는 국내 유민, 탈북자, 강제송환 탈북자, 망명 신청자, 무국적자, 기타 우려 대상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또는 기타 인도주의 단체에 협조한 바 없다.

망명에 대한 접근성: 북한 법률은 망명자 혹은 난민 지위의 부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 정부는 난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 정부는 난민 혹은 망명자 지위를 부여한 바 없다. 또한 난민이나 망명자를 위한 북한 정부의 정책이나 규정은 알려진 바 없으며, 북한은 국제 난민 포럼 등에 참가하지 않는다.

G. 무국적자

해당사항 없음.

제 3 절.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북한 주민들은 평화적으로 정부를 선택할 능력이 없다.

선거 및 정치 참여

최근 선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가 가장 최근에 실시된 것은 3 월이다 . 선거는 공정한 방식에 의한 자유선거가 아니었다 . 정부는 공공연하게 투표 과정을 감시했으며 , 그 결과 투표율과 정부에서 미리 정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모두 100 퍼센트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15 년에 실시된 지방선거 역시 정한 방식에 의한 자유선거가 아니었다 . 정부 발표에의하면 , 투표율은 99.97 퍼센트, 정부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100 퍼센트였다.

정당 및 정치 참여: 북한 정부는 몇몇 "소수 정당 "을 설립하였다. 평의원 조직을 갖추지 못한 이들 정당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명목상의 의석을 배정받은 당직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

여성과 소수자의 소수자의 참여: 2016 년 기준으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약 3.1 퍼센트와 2.8 퍼센트지만, 노동당 지도부 요직에 있는 여성은 거의 없다 . 2014 년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10 퍼센트에 불과하다 .

북한은 단일민족국가이다 .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소수민족이 존재하지 않는다 .

제4절. 부패및정부의투명성부족

공직부패사건에 실제로 형사처벌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검증가능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국제기구들은 고위관료들이 처벌받지 않고 부패행위에 관여한다고 대대적으로 보고했다.

부패: 경제 및 사회전반에 그리고 보위기관내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전해졌다. 2016년 김정은의 주재로 열린 회의는 조직적인 권력남용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첫 회의였으며, 특권을 추구하고, 권한과 권력을 남용하고, 노동당의 “관료주의”를 드러낸 고위관리들의 관행을 다루었다고 알려졌다. 5월에 발간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보고서 “대가는 권리다”에 나온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관영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출근하지 않고 외부 상업활동을 하기 위해 현장지도 감독관들을 매수했다고 한다.

구호식량이 군부와 정부관료집단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도 부패를 보여주는 표지이다. 다수의 부서와 당 기관이 부패문제처리를 담당한다.

재산공개: 정부관리들에 대한 재산공개법 적용여부와 부패척결담당 정부기관의 존재여부에 관한 정보는 공개적으로 입수할 수 없었다.

제5절.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권침해 의혹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북한에는 국내 인권상황을 감독하거나 인권상황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독립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정부는 인권활동에 참여하는 변호사협회,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연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 다수의 단체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관측자들은 이 단체들의 활동을 확인할수없었다.

국제비정부기구와 다수의 국제전문가들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북한정부는 북한의 인권침해상황을 지적한 국제사회의 성명을 정치적 목적에 의한 내정간섭이라며 비난해 왔다. 북한정부는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일부국가들이 자국의 인권침해 상황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그러한 태도야말로 인권존중 원칙을 위협하는 위선적인 행태라고 맞서고 있다.

유엔 혹은 기타 국제기구: 북한정부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인권협정을 비준하였음을 강조하지만, 유엔대표들에 대한 협조는 지속적으로 거부하고있다. 북한정부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사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정부는 계속해서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은 2017년 이후 북한을 방문하지 못했다. 방문은 인권침해혐의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 북한은 계속 특별보고관의 임무에 저항하고 있다.

정부산하 인권기관: 정부 산하기관인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인권유린 사례를 전적으로 부인했다.

제6절. 차별, 사회적 학대 및 인신매매

여성

강간 및 가정폭력: 북한정부는 강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법의 세부내역이나 집행방법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수감자에 대한 억압과 전반적으로 성폭력에 관대한 분위기로 인해 교도관이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다른 수감자가 여성수감자를 강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이유없이 밤에 눈물이 나요”는 성폭력·젠더기반폭력이 만연함을 보고하고, 2011-2015년 사이에 발생한 권력의 공직에 있는 남성에게 의한 성폭행 혹은 성행위 강요 사례들을 묘사하고 있다. 강간사건이 외부로 드러날 경우 가해자는 단순면직을 당하거나 또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2009년에 불법 탈북한 혐의로 체포된 여성을 치안경관이 성폭행한 사례가 있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언급했으나, 변호사는 재판 중에 이를 진술하지 않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를 언급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더 심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통일연구원 백서에 언급되었듯이, 법은 가정폭력을 금하고 있으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이 이같은 폭력에 대한 보호 혹은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탈북자들은 여성폭력이 가정안팎에서 구조적인 문제라고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다. 2013-17년 사이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통일연구원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76.9 퍼센트가 가정폭력이 “흔하다”고 믿고 있었다.

성희롱: 법은 있지만 탈북자들은 가부장적 전통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성희롱 피해여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고 보고했다. 또한 탈북자들은 법 집행이 부족하고 정부관리들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성희롱이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만큼 흔해졌다고 보고했다.

강압적 산아제한: 비정부기구와 탈북자들은 국가보위 관리들이 강제낙태를 행하고 있고, 이는 산아제한 목적이 아닌 인권침해, 특히 강간을 은폐하고 인종적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보고했다. 2019년 통일연구원 백서에 따르면, 일부의 경우, 2013년까지 관리들이 감옥에서 정상출산을 금지시키고 강제낙태를 주문했다고 한다.

차별: 북한 헌법은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당 또는 정부 고위직에 오른 여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탈북자들에 따르면 양성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통일연구원은 식량을 확보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노동과 가사라는 이중 부담의 책임에 덧붙여 임금, 승진 및 배정된 업무 유형의 형태로 여성차별이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아동

출생신고: 아동은 부모를 통해 시민권을 획득하되, 일부의 경우 북한 영토 내에서의 출생을 통해 획득하기도 한다.

교육: 법에 따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12년 의무교육을 무상제공한다. 그러나 일부 아동은 출신성분 제도 및 가족구성원의 범죄로 인한 “연좌제 처벌” 원칙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처벌과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비정부기구 보고에 따르면, 일부 아동들은 비공식적 비용이나 식량부족으로 인해 학교에 정기적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정치범수용소 완전통제구역 안의 아동들은 완전통제구역 밖의 아동들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교과과정이나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한다.

외국인 방문자들과 학계 소식통에 의하면, 학교에서 5학년부터 매주 수시간의 의무군사훈련을 이수해야하며, 모든 아이들이 정치사상교육을 받는다.

의료혜택: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혜택이 남아와 여아에게 동등하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관한 검증가능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었다. 의료제도의 수혜여부는 대체로 정권에 대한 충성도에 의해 좌우된다. 북한 전반의 보건 및 복지 현황에 대한 12월 보고를 보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공개자료와 당해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면접을 활용하여, 어린이를 위한 의료서비스 부족을 보여주었다.

아동학대: 사회 및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북한법에 따르면, 15 세미만의 여성과 성교한 자는 “중형”에 처한다. 정부가 이 법을 시행하는지 여부에 관한 보고는 없다.

조혼 및 강제결혼: 혼인가능 최저연령은 남성 18세, 여성 경우 17세이다.

아동 성착취: 다수의 소녀와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생존이나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억압, 영양실조, 가난, 식량부족을 벗어나려하기 때문에, 2019년 해외 언론보도와 2014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빈번히 인신매매범들의 성적착취 대상이 되었다. 인신매매범들은 어린소녀들에게 북한내 다른 지역이나 중국에서의 일자리를 약속한 후, 그들을 국외로 빼돌려 강제결혼을 시키거나, 가사노예 혹은 매춘업으로 팔아넘겼다. 서울에 기반을 둔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11월에 발간한 북한 아동학대 보고서 “벗어날 수 없는 폭력”을 보면, 북한 학교·가정·수용소·고아원·유치장에서 일어난 성적 학대를 포함한 아동 학대 만연을 기술하고 있다.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https://www.state.gov/trafficking-in-persons-report/>.

유랑아동: 비정부기구 보고에 의하면, 상당수의 노숙아동이 존재하는데 이들 다수가 고아로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한다.

보호시설 아동: 교도관들은 수용소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이나 가족구성원이 수용소 규칙을 위반하면 아동들을 고문했다. 이들은 하루 최장 12 시간 강제노동을 했고 수용소

밖을 나갈 수 없었다고 보고되었다. 수용소는 아동들에게 제한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에서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매체 데일리 NK의 보도에 따르면, 고아들을 위한 보육시설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 못했고, 시설 직원들은 학교 부채를 갚기 위해 식량을 빼돌렸다고 한다. 한 아이는 과로와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아동유괴: 북한은 1980년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 당사국이 아니다.

국무부 부모에 의한 자녀 국제납치에 관한 연례 보고서 참조: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International-Parental-Child-Abduction/providers/legal-reports-and-data/reported-cases.html>.

반유대주의

유태계 인구의 존재는 알려진 바 없으며, 반유대주의 행위는 보고되지 않았다.

인신매매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참조:

<https://www.state.gov/trafficking-in-persons-report/>.

장애인

북한은 자국법이 장애인 권리에 대한 국제적 수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지만, 2016년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탈북자 89퍼센트가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없다고 응답했다.

장애인에게 평등한 공공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이 있으나, 국가는 시행령을 법제화하지 않았다. 전통적 사회규범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직장 등에서 용인되고 있다 (제7.d절참조). 국가는 상이용사를 우대했지만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인들을 평양에서 다른지역으로 추방하고, 수용소내에서 격리하고, 강제불임시술을 받게 했다고 알려져 있다. 장애인들은 공적생활 접근에서 차별을 경험한다.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은 2018년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고, 신축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에 신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가장 최근 2017 년,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는 장애아동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 그리고 이들이 보건·교육·사회보장 혜택을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불충분함을 들어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2019 년 통일연구원 보고서는 장애 아동에 대한 특수교육의 제공을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성적지향 및 성적체성에 기인한 폭력행위, 차별, 기타 가혹행위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적활동을 금하는 법은 존재하지않으나, 성적지향 또는 성적체성에 기인한 차별에 관해서는 입수된 정보가 거의 없었다. 2014년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에는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적활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동성애는 건전한 사고방식과 선량한 풍속을 자랑하는 북한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다”고 보도했다.

제7절 근로자의권리

A.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노동자들에게는 독립적인 노조를 결성하거나, 단체로 교섭하거나 쟁의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 정부에서 설립하고 정부의 통제를 받는 노동단체를 제외한 기타 노동단체는 알려진 바 없다. 북한법은 외국인기업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으며 외국인기업은 노조활동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북한법은 노조활동에 간섭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조활동 참여를 시도하는 노동자들을 고용주의 보복행위로부터 보호하지도 않는다. 불법집회 참가자의 경우 5년 노동교화에 처해질 수 있다.

조선노동당은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연맹 등 다수의 국내 노동단체들을 직접 통제한다. 동맹 산하 노조들은 고전적인 스탈린주의 모델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하고있으며, 생산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자를 동원하고 보건·교육·문화·복지시설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북한정부는 업무배정 및 임금결정 등 공식 고용부문과 관련한 일체의 사안을 통제한다. 합작투자사업 및 외국인소유 회사는 정부의 점검을 거친 명단에서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공장 및 농장 노동자들을 관리위원회에 편입시키며, 위원회는 경영의사결정에 노동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 강제노동 혹은 의무노동 금지

북한법은 강제노동 혹은 의무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설사업이나 기타 노동과업에 주민을 동원하고있다. 때때로 가족전체를 대상으로한 "노동교화"와 "노동을 통한 재교육"은 정치범을 처벌하는데 흔히 활용되는 도구이다. 정치범의 경우 계속해서 벌목, 채굴, 작물재배 및 제조와 같은 강제노동 및 의무노동이 일상적으로 강요되고있다.

북한법은 노동가능 연령의 모든 국민이 일하고 "노동규율과 근로시간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농장 및 공장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식량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 벽돌제조, 시멘트제조, 채탄, 채금, 벌목, 철생산, 농업 및 섬유산업에서 강제노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 시민단체 "열린북한"은 북한주민들이 연간 9 억 7,500 만달러 규모의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워크프리재단이 2018 년에 발표한 세계노예지수에 따르면 북한주민 10 명중 1 명, 다시 말해, 약 260 만명이 현대판 노예로 살고 있는것으로 추산됐다.

한 시민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단기경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선공장과 농장들이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연장했으며, 개·보수에 필요한 물자 구매를 위해 근로자들이 곡식이나 현금을 공여할 것을 독려했다. 경제계획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법에 의해 2 년 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다. 2018 년 노동자들은 정부에서 지정한 기업체에 근무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에 따른임금을 전혀 받지 못 하거나 정당한

액수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는 보고가 있었다. 언론은 당국으로부터 숨고 집단동원을 피하기 위해 산간오지로 이동하는 도시빈민의 수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5 월 유엔 보고서 “대가는 권리다”에 따르면, 체제 밖 비공식 부문에서 발생하는 일자리는 생존을 위한 기본 수단이 되었지만, 비공식 부문에서의 일자리는 뇌물에 의한 매수에 달렸다”고 한다.

2018 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당국이 2017 년에 새로운 철로와 고층아파트 단지건설 공사를 목적으로 량강도 주민 600 가구를 퇴거시킨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퇴거된 주민중 일부는 청년돌격대로 철로건설에 동원된 것으로 보고됐다.

열린북한이 발간한 “거대한 노예 노동국가, 북한(Sweatshop, North Korea)”을 보면, 출신성분이 낮은 16~17 세 청소년들은 돌격대라고 불리는 군대식 공병여단에 동원되어 10 년 강제노동에 투입되었다. 한 노동자는 한달 임금으로 고작 120 원(0.15 달러 미만)을 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일례로, 2016 년 “200 일전투” 노력동원 기간에, 이같이 어린 노동자들은 많게는 하루 17 시간 노동했다. 관영방송은 노동자들이 영하 기온에서 일했다고 선전했다. 한 노동자는 근로조건이 극도로 위험했으며 아파트 한층이 올라갈 때마다 최소한 1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고했다. 출신성분이 일생의 직업을 결정하며 가장 낮은 출신성분은 위험한 광산에 배치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정부가 지역이나 지방, 혹은 소구역 수준에서 ‘노동단련대’를 운영하면서 단기간 동안 수감자들에게 강도높은 노동을 강요하고 식량을 거의 제공하지 않으며 상습적인 구타를 포함하여 가혹행위를 자행한다고 보고했다. 당국은 암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나 실직자를 이러한 노동단련대에 수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 년 10 월 북한인권위원회는 어린이를 포함한 수만명의 주민들이 이러한 감옥과 같은 여건의 단련대에 수감되어있고, 위성사진을 보면 이같은 수용소의 숫자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했다.

연말 기준, 수만명의 북한주민들이 주로 러시아와 중국 등 해외에서 노동하고 있었다. 당해연도에 노동자들은 알제리, 앙골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기니, 이탈리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말리, 몽골, 모잠비크, 네팔, 나이지리아, 오만, 폴란드, 카타르, 콩고공화국, 세네갈, 탄자니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잠비아, 짐바브웨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일부 국가들은 이후 그해 북한 노동자의 대부분 혹은 전부를 귀환시켰다. 하지만, 보고에 따르면, 몇몇 국가들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거나 북한 노동자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 혹은 다른 서류를 발급 재개했음을 암시한다.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년대비 5 배이상 많은 관광 및 유학비자를 북한주민에게 발급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비자가 북한 노동자들을 위한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기존에 폐쇄됐던 중국내 공장들이 북한노동자를 새로 채용하여 가동을 재개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다수의 비정부기구들은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노동자는 정부정책 차원에서 정부의 관리를 받으며 정부보안요원의 지속적인 밀착감시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노동자는 하루 평균 12~16 시간, 많게는 20 시간까지도 노동을 강요받고 있으며 휴일은 한달에 1~2 일에 불과했다. 고용주들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월 27~90 만원(300~1,000 달러)으로 알려져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고용기업은 노동자의 급여를 북한정부에 직접 지불하며, 정부가 총 수입의 70~90 퍼센트를 가져가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소득은 월 9 만원(100 달러) 정도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수억달러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한 경우에 파견노동자가 3 년계약을 완료하고 귀국할 때까지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노동자들은 의류·건설·신발제조·환대산업·정보통신서비스·별목·의료·제약·식당·해산물가공·섬유·조선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일하고 있었다.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참조:

<https://www.state.gov/trafficking-in-persons-report/>.

C. 아동노동금지및취업최저연령

국가는 법에 따라 16 세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16~17 세의 청소년이 위험한 노동여건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강제아동노동을 법으로 처벌하지만 그같은 관행이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다. 비정부기구 보고에 따르면, 정부관리들은 수천명의 아동을 억류하고 부모와 함께 노동수용소에서 강제노동하도록 했다고 한다.

관리들이 가끔씩 생산목표를 달성하거나 주요 도로 제설작업 등의 특별과제 완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을 단기간 동안 공장이나 농장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들 역시 가족을 떠나 농업부문 사업에 대규모로 동원되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경우가 있으며 그러한 기간이 한 번에 한 달간 지속되기도 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일 년에 두 차례, 각 한 달씩 보상없이 농장에서 강제노동하도록 했다는 학생들의 보고를 발간했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학교가 교원급여와 학교시설 유지비를 조성하기 위해 최저근로연령보다 어린 학생들도 일하게 했다고 보고했다. 8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14~15 세 학생들은 노동당 아편농장에 일하도록 동원되었다.

16~17 세 청소년들은 군대식 공병여단 돌격대에 10 년간 배치되어 장시간 위험한 노동을 했다. 강제노동의 결과로 학생들은 신체적·정신적상해, 영양실조, 탈진, 성장장애를 겪었다.

D. 고용 및 직업과 관련된 차별

법은 국민들이 “국가의 모든 영역과 공적활동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노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인종, 종교, 민족, 기타요인에 기초한 고용이나 직업과 관련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 법에는 고용차별에 관한 내용이 직접적 언급되어있지 않다. 성분제도에 기초한 계급이 동등한 고용기회나 동등한 급여에 영향을 미친다.

법은 여성에게 동등한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여성에 대한 사회적·법적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법 및 국가지시는 고용에서 남녀분리를 규정하고 특정 직종을 여성에게 배정하면서 다른 직종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다. 여성의 정년은 55 세인 반면 남성의 정년은 60 세로서, 여성의 연금혜택, 경제적 자립, 결정권 있는 지위로의 승진을 측면에서 실질적인 영향이 있다.

장애인 역시 고용차별에 직면하고 있었다. 1950 년대에 세워진 장애인을 위한 1,200 여개 작업장과 경공업 공장은 대부분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포용적 일터는 제한적이었다.

E. 용인가능한 최저 근로조건

북한에는 법에 의한 최저임금이 없다. 국영기업이 지급하는 최저임금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는 입수할 수 없었다. 가끔, 적어도 급여의 일부는 현금보다는 현물로 지급되고 있었다.

법은 1 일 8 시간 노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김정일 저서 의무학습을 위한 추가 시간을 포함해서 노동자들의 일하는 시간은 이보다 더 많다고 한다. 헌법은 매주 1 일의 휴일(일요일), 유급휴가, 공휴일,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요양소와 휴양소의 이용 등 "휴식에 대한 권리"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는 알 수 없다.

법은 국가가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근로조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은 인명피해나 기타 "중대한 손실"이 야기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안전 및 근무조건과 관련된 "노동안전명령" 불이행을 처벌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는 유해한 작업환경을 스스로 떠날 수 있는 명시된 권리가 없다. 노동법 시행에 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경우에 따라서 공휴일 대규모 행사와 그에 대비한 예행연습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하므로 휴가나 휴식을 포기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적어도 공휴일의 일부를 소속작업반원들과 함께 "축하"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틀간의 연휴가 주어지는 경우에만 가족과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일부 노동자들은 비공식 또는 지하경제에서 소득창출활동을 모색하게 된다고 한다.

많은 작업 현장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산업 재해율이 높은 상황이다.

미주(尾註): 자료 출처 관련 주의사항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지 않았다. 북한은 외국정부대표, 언론인 또는 기타 내빈에게 인권상황에 대한 충분한 평가 또는 보고된 인권침해의 확인에 필요한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